####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☀ 신고안내유형 및 기장의무 안내 성명 이금복 생년월일 72.04.0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(D유형) 안내유형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적용경비율 기준경비율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 ARS 개별인증번호

#### ※ 사업장별 수입금액

사업자	AL#	수입종류 구분코드	업종 코드	사업 형태	기장 의무	경비율	수입금액-	기준경	병비율	단순경비율	
사업자 등록번호	상호	구분코드	코드	형태	의무	경미출		일반	자가	일반 (기본)	자가 (초과)
		사업소득지급명세 서 등 결정자료	940909	단독	간편장부	기준	53,056,563	18.9%	18.9%	64.1%	49.7%

#### ※ 타소득(합산대상) 자료유무

소 <del>득종류</del>	이자	배당	근	로	연금	기타
<del>175π</del>	이자	- 10 - 10	단일	복수		기다
해당여부	X	X	X	X	X	X

※ 종교인기타 소득유무: Χ

#### ※ 공제 참고자료

구분		납입액(부담액)	공제 가능액	
기납부	중간예납세액(기납부세액)	0	중간예납세액 전액	
세액	원천징수세액 (인적용역 사업소득)	1,591,630원	원천징수세액 전액	
	국민연금보험료	1,430,630원	납부액전액	
소득 공제	개인연금저축	0원	납입액의 40%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	
항목	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(노란우산공제)	0원	납입액과 200만원(사업소득 1억원초과), 300만원(사업소득 1억원이하), 500만원(사 업소득 4천만원이하) 중 적은 금액	
세액 공제	퇴직연금세액공제	0원	하단 참고사항을 확인하세요	
항목 항목	연금계좌세액공제	0원	어린 삼포사랑들 작한야세요	

- 1)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) 이하인 거주자는 15% ㄱ) 50세 이상: 납입액[한도 6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)] ㄴ) 50세 미만: 납입액[한도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)] 2)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) 거주자는 12% ㄱ) 50세 이상: 납입액[한도 6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)] ㄴ) 50세 미만: 납입액[한도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)] 읍) 종합소득금액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) 초과자는 300만원한도 12%

※ 가산세 항목					
가산세 항목	가산세	적용사	유 또는	가산세 미	대상
무신고 또는 무기장가산세					
(세금)계산서관련 보고불성실	미(ス	연) 제출	출금액		0 원
현금영수증미가맹					
현금영수증미발급	금영수증미발급 미발급 금액 0 원		0 원		
현금영수증발급거부	10만원 미만	0 건	10민	<sup>上</sup> 원이상	0 원
신용카드발급거부	10만원 미만	0 건	10민	<sup>上</sup> 원이상	0 원
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	무	과소신고	그금액		0 원
사업용계좌미신고					

### ☀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8귀속	2019귀속	2020귀속	
종합소득금액	<b>종합소득금액</b> 9,157		15,500	
소득공제	소 <del>득공제</del> 3,532		2,166	
<b>과세표준</b> 5,625		14,651	13,334	
<b>세율</b> 6.00 %		15.00 %	15.00 %	
<b>산출세액</b> 338		1,118	920	
공제·감면세액	211	90	70	
<b>결정세액</b> 127		1,028	850	
실효세을 2.26 %		7.02 %	6.37 %	

#### ※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

(단위 : 천원)

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귀속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
수입금액	17,150	43,561	42,915
필요경비	10,993	27,410	27,414
소득금액	6157	16151	15500
소득률(당해업체)	35.90 %	37.08 %	36.12 %

# ※ 2020년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(주사업장 기준)

계정과목	금액	당해업체(%)	업종평균(%)
4.복리후생비	0	0.00	0.00
18.접대비	0	0.00	0.00
19.광고선전비	0	0.00	0.00
22.차량유지비	0	0.00	0.00
24.지급수수료	0	0.00	0.00
28.소모품비	0	0.00	0.00
34.기타판관비	0	0.00	0.00

#### ※ 2021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분석

※ 2021년 사업용 신용카드 <del>사용현황분석</del>						
구분	합계	신변잡화구입	가정용품구입	업무무관 업소이용	개인적치료	해외사용액
건수	0	0	0	0	0	0
금액	0	0	0	0	0	0

#### ☀ 소득세 개별분석자료: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대상자

## ※ 업종별 유의사항

업 종	업종코드	신고시 유의할 사항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940909	○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비와 주택구입을 위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○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. ○ 사업자등록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 한도 계산시 일반기업의 기본한도액(1,200만원)을 적용하여야합니다. ○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인건비, 복리후생비,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없습니다.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○ 「보험업법」에 규정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,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위반한 경우, 해당 대납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가 어려우므로 「소득세법」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.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(단위 : 천원)